

물품무상양여합의서

지방자치단체명 : 서울특별시

출연기관명 : 서울신용보증재단

내용(품명)

OPC : 93대
○모니터 : 93대

일시

2017년 12월 8일

무상양여조건

불용물품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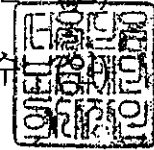
무상양여 근거 사유

- 국가정보기본법 제34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)
-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단체 물품 관리·운영 기준
- 서울특별시정보화 기본조례 제34조(정보격차 해소추진)
-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(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)

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.

인계자 : 전산지원부 주임 성명 김 후 빈

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성명 문 진 수



지방자치단체명 : 서울특별시

소속기관명 : 정보통신보안담당관

무상양여 받은 후

물품의 분류

불용품(비품)

물품의 용도

폐기

상기 물품을 인수하겠습니다.

인수자 : 인수관서의 장

물품관리관·직 성명

정보통신보안담당관
김 단 겹

